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6고정10038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이수빈(공판)
판 결 선 고 2026.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를 운영하면서 통신판매중개 플랫폼 'D'에서 'E'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직접 촬영하여 만든 저작물인 남성 모델의 화보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0. 2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



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H', 'I', 'J', 'K', 'L', 'M'의 각 화보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포인트를 받고 위 사람들이 위 각 화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G 회신자료 관련)

1. 추가 증거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아 _____